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안 번 호 제2022-009-058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2. 5. 25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4,5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,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4839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,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 일반현황 >

대표	설립일자	상시직원 수	매출액('21년)	주요서비스

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¹⁾는 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()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1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가. 사고 경위 및 규모

피심인은 년 위한 '이벤트'를 실 시하면서 초기 이틀간() 구매한 명에 대하여 배송지 확인 및 변경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()하였다.

문자 발송 시, 문자에 배송지 확인 링크주소()가 포함되어있으며,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code=13에 해당하는 특정인의 성명과 배송지주소가 노출, code 숫자를 변경하면 다른 사람 성명과 배송지주소가 노출되었다.

로그 분석 결과 총 명의 성명·배송지주소가 유출된 것을 확인 하였다.

^{1) 2020. 8. 5.} 시행된 개정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)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(제2항),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·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(제3항)

나. 사고인지 및 대응

- ('20.3.15.)
 에 문자(링크)를 클릭하면 타인의 성명과 주
 소가 나온다는 제보가 접수(01:10분)
 - 링크 서버 접속 통제조치(02:17분)
 - 에 수사 의뢰(14:27분)
- o (**'20.3.16.**) 인터넷진흥원에 유출신고
 - 트위터 게재 및 에 사과문 게제
- o ('20.3.20.) 1차 정보유출이 확인된 고객 명에게 문자 통지
- o ('20.3.20~22.) 로그분석 실시 및 유출규모 인지
- ㅇ ('20.3.26.) 2차 정보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

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- 1) 피심인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·관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2)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변경·말소에 대한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, 계정을 부여받은 자 및 계정 변경·말소에 관한 내역을 기록·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3)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 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,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시에도 시

스템 잠김 등의 조치를 하지 사실이 있다.

- 4)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었다.
- 5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

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 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가. 관련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이 이 당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,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(제1호)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(제2호), 개인정보 침해사고

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^[제4호]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.

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47호)」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

-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관리,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,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 (제4조 제4항)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전 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(제5조제3항)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제5조제6항)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한다. (제8조제1항)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

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(제8조제2항)

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·관리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4조제4항),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·변경·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·보관하지 않은 사실(고시제5조제3항), ③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5조제6항), ④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보관·관리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8조제1항),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8조제2항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.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법 제75조제 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「과태료 부과기준」에 따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 산정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단위:만원)		
	,	1회	2회	3회 이상
타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 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P! MI/5/2	600	1,200	2,400

나. 과태료의 가중ㆍ감경

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기준금액의 25%인 150만원을 감경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(행정안전부 기준('19.10.7.))>

유형	내용	기준	
대상규모	중·소기업	감경(50%)	
내용.정도	경미사항 3/10 미만 위반 [*]	감경(50%)	
네ō.oエ	중요사항 7/10 이상 위반*	가중(50%)	
위반자유형	위반자유형 장애/심신미약자 등		
	부주 의등 + 피해없음	감경(50%)	
	검사 전 시정/해소	감경(50%)	
태도.노력	<u>의견제출 기간 시정/해소</u>	<u>감경(25%)</u>	
	은폐·조작 위반	가중(50%)	
	검사 거부/미시정	가중(50%)	
	피해자 10만명 이상	가중(50%)	
결과	2차 피해 발생	가중(50%)	
	3개월 이상	가중(50%)	
기타 필요 시	기타 필요 시	감경	
기니 글보 시	기타 필요 시	가중	

^{*} 과태료 5천만원(75조1항) 적용 조항은 중요사항, 1천만원(75조3항) 적용 조항은 경미사항으로 구분

[※]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

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 대료) 제2항 제6호에 의한 과대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2년 5월 25일

위원장 윤종인 (서명)

부위원장 최영진 (서명)

위 원 고성학 (서명)

위 원 백대용 (서명)

위 원 서종식 (서명)

위 원 염흥열 (서명)

위 원 이희정 (서명)

위 원 지성우 (서명)